

회원 관리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우 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정관 제3장 및 제7장 제23조에 의한 회원의 관리 및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2 조 (회원구성) ①연맹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정회원(일반평생,단체평생,가족평생,가족회원,단체회원,감면회원,일반회원,면제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정관에 정한 특별회원과 연맹산하 단체의 본부 이하 지부 사무소)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정회원만 해당된다.(준회원 특별회원은 정수에서 제외한다)

제 3 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입회신청서(회원등록 카드 양식)를 작성하여 입회비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Web Site) 이용 및 절차에 의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에 가입시 허가장과 자격증을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내용과 일치한지 여부를 연맹에서 확인 후 승인한다.

③지역본부에서의 가입할 때에는 지역본부에서 허가장과 자격증 내용을 확인한 후 회원등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사항을 지역본부장의 확인 후 연맹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원 가입시에 허가장의 주소지로 지역본부를 구분하며, 허가장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에는 허가장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를 변경한다.

⑤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회원가입 적격자에게는 회원증을 발행해서 본인에게 회원가입을 통지한다.

⑥ 준회원에게는 준회원 번호를 지정한다.

⑦ 연맹은 회원가입 부적격자에게는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회원가입신청에 따른 입회금 및 회비를 반납한다.

제 4조 (등록사항) 정회원, 가족회원 및 준회원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 : 단체인 경우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

2. 생년월일 : 단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한다.

3. 주소 : 허가장의 주소지로 한다 (단체인 경우도 동일).

4. 회원의 종류

5. 회비의 납입 기간

6. 가입 연월일 (등록 연월일)

7. 아마추어국의 허가장과 자격증 사본(단체국은 허가장과 단체국 대표의 자격증사본)

8. 준회원 번호 (준회원의 경우에 한한다.)

9. 등록변경 연월일

제 5 조 (임의탈퇴) 연맹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서면(서식)으로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법정탈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자연히 탈퇴된다.

1. 회원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4. 평생회원(단체 ,가족회원 포함), 감면회원, 면제회원의 경우 허가장의 유효기간까지를 회원으로 하며 재허가를 득한 후 허가장을 첨부하여 계속회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재허가 유효기간까지 포함) 단, 재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허가를 받지 않아서 아마추어국이 실효된 자가 연맹의 회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주민등록 초본 등).

단체평생회원도 허가장 기간까지를 회원으로 하나 단체가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징계) ① 다음의 경우에는 정관 제7조 2항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1. 관련 법규 또는 연맹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연맹의 사업 및 목적을 저해하였을 경우

3.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주의(구두 경고), 경고(시말서 징구), 자격정지 1년, 2년, 3년, 제명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이사가 된다.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시를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8 조 (재가입) ① 연맹을 탈퇴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되었던 자는 재가입할 수 있다.

② 이사회결의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소속 지역본부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회 비

제 9 조 (회 원)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가족회원, 단체정회원)
2. 준 회 원
3. 특별회원

제 10 조 (회 비) 회비의 종류와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의 종류와 금액 (단위 : 원)

구 분	정회원	가족회원	단체 정회원	준회원
입 회 비	30,000	30,000	50,000	30,000
월 회 비	4,000	2,000	5,000	4,000
평생회비	600,000	300,000	750,000	-

2. 입회비는 연맹 가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
3. 월회비는 자동이체 또는 6개월분 이상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4. 평생회비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족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 또는 가입 시에는 시설자가 평생회원이어야만 된다.
5. 가족 회원은 시설자를 제외하고 추가 회원 3인까지 회비의 50%를 감면하며 4인 이상에 대하여는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1 조 (납 부) ① 회비는 연맹 사무총국으로 납부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Web Site) 이용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중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②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제2항의 회원자격 정지자는 계속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단 미납된 회비를 완납시는 계속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되 입후보자격 (피선거권)은 2년간 제한 한다.

④ 회원 회비 미납자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제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 12 조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면제) ① 신체장애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1급의 장애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 제2급 및 제3급 장애인인 회원은 회비의 50%를 감면한다.

- ②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회비 면제 신청서 및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준회원의 정회원 가입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 4 장 시 상

제 13 조 (자 격) 시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맹의 사업,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으로 연맹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아마추어국의 운용이 우수한 자.
3.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4. 기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14 조 (시 상) ① 제13조의 해당자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 2개월 전까지 연맹으로 수상자후보 공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시상하며, 정회원 수 300명당 1명씩을 시상하며, 1명은 연맹 총회에서, 추가수상자는 지역본부 총회에서 분리 시상한다. 단, 유관기관의 표창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사례를 모집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1인(단체)을 선정하여 연맹총회에서 봉사상을 시상할 수 있다.
- ④ 총회 산회 후 수상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시상한다.

제 15 조 삭 제 (AWARD 관리규정으로 별도규정 개정)

제 16 조 삭 제 (AWARD 관리규정으로 별도규정 개정)

제 5 장 대 의 원

제 17 조 (대 의 원) 대의원은 각 지역본부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출하

고, 대의원수는 회원이 선출한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을 합한 숫자를 정수로 한다. 당연직 대의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지역본부장 및 고문 등이 포함된다. 단, 고문은 희망자에 한하여 포함한다.

제 18 조 (제 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준회원
2. (삭 제)
3. 회비 면제 대상자 (단, 장애인은 제외)
4.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

제 19 조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에 부의된 제반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갖는다.

제 20 조 (대의원수 배정) ①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100명 이내로 한다.

② 매년 12월말에 각 지역본부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이를 백분율로 나누어 대의원 수를 배정하고, 다음해 1월중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각 지역본부에 통보한다. 단 백분율 계산 시 정수만 인정하며, 백분율이 1/100 이 안되는 지역본부에는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한다.

③ 12월말 포함 3개월 이전까지 업무보고가 안된 본부에는 대의원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대의원 선출) 매년 3월말까지 각 지역본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 개선이 있는 해에는 개선된 임원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22 조 (명단보고) 지역본부장은 대의원의 명단을 성명, 호출부호, 회비 납부 사항, 회원 가입 일자 및 현주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피선통보) 지역본부장은 피선된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제1장 및 제2장 개정) ① 1995. 1. 14. 제7조 제③항 및 제8조 제②항 개정

- ② 1996. 10. 8. 제7조 제②항, 제③항 개정
- ③ 1999. 5. 8. 제7조, 제8조 개정
- ④ 2001. 7. 14. 제7조 제①항, ②항 개정 및 제③항, ④항 신설
- ⑤ 2002. 1. 12. 제3조 제①항 개정
- ⑥ 2004. 5. 22. 제1조, 제3조 개정
- ⑦ 2006. 1. 14 제7조 ②항 개정

제 2 조 (제3장 시행일 및 개정) ① 제3장은 1986. 3. 1. 부터 시행한다.

- ② 1987. 4. 제12조 종신 회비 개정
- ③ 1989. 9. 22. 제 9조 단체국 종신회비 추가
- ④ 1992. 8. 제11조 제①항 및 제②항 변경
- ⑤ 1994. 8. 28. 제10조 정회원 회비 개정
- ⑥ 1996. 10. 8. 제9조 및 제10조 개정
- ⑦ 1997. 10. 14. 제10조, 제11조, 제12조 개정, 단 제11조 제1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1998. 6. 11. 제12조 개정
- ⑨ 1999. 5. 8. 제10조, 제11조 개정
- ⑩ 2000. 7. 8. 제10조 개정. 종신회비 인상은 2000. 9. 1.부터 시행한다.
- ⑪ 2001. 7. 14. 제11조 제④항 신설
- ⑫ 2002. 1. 12. 제11조 제①항 개정
- ⑬ 2002. 3. 9. 제10조 제③항 신설
- ⑭ 2003. 3. 8. 제10조 제②항 개정
- ⑮ 2004. 5. 22. 제12조 제③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2004. 9. 11. 제10조 종신회비를 평생회비로 개정함. 제10조 제5호의 개정에서 평생회비는 회비면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06 2. 11. 제10조 ③항, ④항 개정
- 2007. 3. 3. 제11조 제③항 개정

제 3 조 (제4장 개정) ① 1995. 1. 14. 제15조 제①항의 제4호 및 제5호와 제4호의 가목 개정

- ② 1996. 10. 8. 제15조 제③항의 6신설, 제⑤항 삭제
- ③ 1997. 10. 14. 제14조 제③항 개정
- ④ 1999. 1. 12. 제15조 ⑤항 신설
- ⑤ 1999. 2. 10. 제14조 개정
- ⑥ 2001. 11. 10. 제15조 제①항, 제⑤항 개정
- ⑦ 2002. 1. 12. 제13조 제③항 신설, 제14조 개정 및 제3조 신설.

제 4 조 (제5장 시행일 및 개정) ① 제5장은 1984. 1. 1. 부터 시행한다.

- ② 1991. 2. 26. 제17조 및 제20조 제②항 개정
- ③ 1992. 8. 25. 목적, 적용 삭제, 임기 제17조 삭제, 제24조 삽입
- ④ 1995. 1. 14. 제20조 제②항 및 제21조 개정
- ⑤ 1996. 10. 8. 제17조개정, 제18조 제④항 신설,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 ⑥ 1997. 10. 14. 제20조, 제22조 개정
- ⑦ 1998. 6. 11. 제18조 개정
- ⑧ 1999. 1. 12. 제17조 개정
- ⑨ 2015. 2. 14. 제20조 개정
- ⑩ 2016. 4. 9. 제18조 제②항 삭제
- ⑪ 2016. 5. 14. 제17조 개정 및 단서조항 삽입

제 5 조 (개 정) ① 기존의 총 25개 규정을 총 5편 29장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 중 제1편은 회원 관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였고, 그 내역 및 경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운영내규중 제2장 제2조 - 제10조를 제1편 제2장 회원으로 통합
 2. 회비 규정 제1-5조를 제1편 제3장 회비로 통합
 3. 사무국운영내규 제9장 제36-37조를 제1편 제4장 시상으로 통합
 4. 대의원선출규정 제1-10조를 제1편 제5장 대의원으로 통합
 5. 1992. 8. 25. 이사회에 부의 되어 동년 9. 29. 확정
- ② 2004. 5. 22. 각 편을 독립규정으로 분리하고 제목의 편수 삭제 및 부칙조문 개정

부 칙 (2008년10월18일)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